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세열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1일

발 의 자 : 이세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우, 김생환,
김수규, 김인호, 김재형,
김정태, 김춘례, 김혜련,
노승재, 문장길, 박기열,
박기재, 송아량, 송정빈,
이광호, 이영실, 임종국,
장상기, 장인홍, 정진술,
정진철, 최 선, 황인구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'19.12.10)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조 중 '제91조제6항'을 '제91조제7항'으로 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(안 제1조).
- 나. 안 제4조 중 '제5항'을 '제4항'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1조제6항”을 “제91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